



의안번호	제00호
회의 연월일	2024. 8. 19. (제545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제출연월일	2024. 7. 10.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8~9월 중 입법예고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이란 법 제2조제23호의 어린이통학버스를 말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해체·조작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 (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및 시험·연구기관이 시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교통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 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
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운전자의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
라 한다)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
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교통안전교육기관”
으로 한다.

제86조제5항에 제1호의4, 제2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2의2.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7. 법 제5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및 검사

8.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기록의 접수 및 보관

제87조의3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별표 6의 10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법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간 말일까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9호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3일 이내인 사람		10만원
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3일 초과 150일 이내인 사람		10만원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151일 이상인 사람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u> <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u>동차등”이란 법 제2조제23호의</u> <u>어린이통학버스를 말한다.</u>
<u><신 설></u>	<u>제3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의</u> <u>해체·조작 등) 법 제50조의3제4</u> <u>항제3호에서 “교육·연구의 목적</u> <u>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u> <u>말한다.</u> <u>1.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u> <u>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u> <u>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 및</u> <u>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u> <u>학원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려</u> <u>는 경우</u> <u>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u> <u>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및 시</u> <u>험·연구기관이 시험 또는 연구</u> <u>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u> <u>3. 교통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u>

전시 등 운행 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交通安全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交通安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운전자의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시험 응시 전交通安全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u>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u> (이하 “<u>교통안전교육기관</u>”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u>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u>교통안전교육기관</u>-----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 ④ (생략) 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생략) 1의3. (생략) <u><신설></u>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u>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생략)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1. ~ 5. (생략) <u><신설></u>	<u>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u> 2. (현행과 같음) 2의2. <u>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u> <u>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u> <u>급</u> 3. ~ 6. (현행과 같음) 7. <u>법 제50조의3제1항, 제2항 및</u> <u>제6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u> <u>장치의 등록 및 검사</u> 8. <u>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u> <u>제출된 운행기록의 접수 및</u> <u>보관</u>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건부</u> <u>운전면허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